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I .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1,500만원, 징수결정액 81억 6,400만원, 실제수납액 39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04.3%, 징수결정액 대비 48.0%를 징수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총 계	115	8,164	3,915	3404.3	4,248
일 반 회 계	115	8,164	3,915	3404.3	4,248

- 특별회계 세입은 없음.

□ 세출결산 총괄

-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 188억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47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4억 1,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18,860	14,764	2,683	1,413 (7.5%)
일 반 회 계	17,150	13,267	2,477	1,406 (8.2%)
도 시 개 발	1,710	1,497	206	7 (0.4%)

Ⅱ .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1,500만원, 징수결정액은 81억 6,400만원이며, 이 중 39억 1,5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2억 4,8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115	8,164	3,915	3404.3	4,248
세 외 수 입 (과태료)	30	7,679	3,431	11436.7	4,248
보 조 금 (국고보조금)	85	485	485	570.6	

□ 세출결산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1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3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14억 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일 반 회 계	17,150	15,478	13,267	2,477	1,406
도 시 계 획 과	4,093	3,904	3,247	657	189
도 시 관 리 과	3,594	2,941	2,071	1,210	313
시 설 계 획 과	1,357	1,224	843	381	133
토 지 관 리 과	1,022	993	993		29
도 시 빛 정 책 과	7,084	6,417	6,114	228	742

□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가. 예산이용·전용·변경사용 : 없음

나. 이체¹⁾

○ 이체는 46건에 7,411억 1,300만원원입.

▪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시설비)	1억원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연구용역비)	4억 2,800만원
▪ 서울경관기록화사업(5차)(사무관리비)	1억 9,200만원
▪ 도시계획과 기본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400만원
▪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시설비)	2억원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사무관리비)	1억원
▪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시설비)	1억 5,000만원
▪ 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시설비)	2억 6,300만원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사무관리비)	6억 1,100만원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시설비)	13억 5,000만원
▪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 분석(시설비)	1억원
▪ 행복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원
▪ 행복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사무관리비)	1억 9,400만원
▪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사무관리비)	5,000만원
▪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3억원
▪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설비)	3억 5,000만원
▪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사무관리비)	700만원
▪ 도시계획과 기본경비(국내여비)	7,100만원
▪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	7,277억 6,300만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공공운영비)	1억 3,200만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시설비)	12억 5,000만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시설비) 명시이월예산	13억 3,900만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감리비)	5,000만원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감리비) 명시이월예산	2억원

1) 세입·세출결산서 57쪽 참조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9,000만원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사무관리비)	4,400만원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행사운영비)	2,200만원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기타보상금)	1,300만원
▪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사무관리비)	1억 5,500만원
▪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국제부담금)	1,100만원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000만원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무관리비)	5,000만원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시설비)	14억 1,000만원
▪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기타보상금)	1,300만원
▪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시설비)	1억 8,700만원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연구용역비)	1억 2,700만원
▪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 사업(시설비)	2억 5,000만원
▪ 장안동 먹자골목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
▪ 도시관리과 기본경비(공공운영비)	300만원
▪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사무관리비)	3억원
▪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시설비)	12억원
▪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연구용역비)	1억원

다. 예비비 지출 : 없음

라. 명시이월²⁾

○ 명시이월은 3건에 4억 6,800만원임.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시설비)	3억 2,700만원
▪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비)	6,000만원
▪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시설비)	8,100만원

2) 세입·세출결산서 109쪽 참조

마. 사고이월3)

○ 사고이월은 11건에 20억 900만원임.

▪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사무관리비)	6,000만원
▪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
▪ 서남권 일대 균형 발전 방안 수립(시설비)	1억 900만원
▪ 수서·문정지역 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 관리 방안 수립(시설비)	1억 3,600만원
▪ 서울시 R&D 지구(양재,우면) 육성 종합 계획 수립(연구용역비)	1억 8,300만원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연구용역비)	1억 9,200만원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시설비)	6억 9,100만원
▪ 유희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연구용역비)	9,600만원
▪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시설비)	4,300만원
▪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용역 및 기본계획(시설비)	2억 4,200만원
▪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 사업(시설비)	8,700만원

바. 집행잔액4)

○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14억 600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600만원
▪ 예산절감(유보액)	100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13억 4,900만원

2.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음

3) 세입·세출결산서 114쪽 참조

4) 세입·세출결산서 89쪽 참조

□ 세출결산

- 201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1,000만원으로 이 중 17억 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도시개발특별회계	1,710	1,703	1,497	206	7
도 시 계 획 과	387	381	319	62	6
도 시 관 리 과	1,323	1,322	1,177	144	1

□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용

가. 예산이용·전용·변경사용 : 없음

나. 이체⁵⁾

- 이체는 4건 13억 2,600만원임.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연구용역비) 1억 4,400만원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설비) 4억 2,200만원
-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설비) 4억 4,700만원
- 장안평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시설비) 3억 1,300만원

다. 예비비 지출 : 없음

라. 명시이월 : 없음

마. 사고이월⁶⁾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건 2억 600만원임.

-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시설비) 6,200만원
-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시설비) 1억 4,400만원

5) 세입·세출결산서 63쪽 참조

6) 세입·세출결산서 116쪽 참조

바. 집행잔액⁷⁾

-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700만원이며, 이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에 따른 것임.

Ⅲ. 검토의견

1. 성과목표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태료)과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실제 수납액은 39억 1,5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억 1,500만원 대비 3,403.3%, 징수결정액 81억 6,400만원 대비 48%에 해당함.

미수납액은 42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 전부를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음. 과오납반환액 1억 3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⁸⁾에 의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은 없음.

(단위 : 백만원)

연도	회 계	예산현액 ④=①+②	징 수 결정액 ⑤	수납액			미수납액 ⑥=④- ③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징수율 (예산현액 대비)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 ②				
'15	일 반 회 계	115	8,164	4,018	103	3,915	4,248		4,248	3404.3%
'14	일 반 회 계	542	4,591	2,216	1,533	682	3,909	0.7	3,908	125.8%
'13	일 반 회 계	3,554	5,094	1,866	999	867	4,227	122	4,106	24.4%

7) 세입·세출결산서 98쪽 참조

8) 2008.12월 건축주가 승계받은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안(이자 및 증가산금 반환, '15.1.5)으로 기반시설부담금 1억 300만원을 과오납 환급한 것임.

- 일반회계 세입 관련, 예산현액(1억 1,500만원)과 징수결정액(81억 6,400만원)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 2014년도 미수납된 기반시설부담금(지난연도 수입) 38억 9,700만원을 2015년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합계	115	8,164	4,018		
일부담반금		△103	103	△103	· 기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강남구 1건, 사유 :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태료	30	68	57	38	· 부동산개발업법 및 측량업법 위반업체 증가
시·도비환급(9)		2,522	2,522	2,522	·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비 시비 부담금 회수(중랑구, 관악구, 서대문구 ; 2,379백만원), 시비 집행잔액 등 회수(143백만원)
그수외입		156	154	156	· 기반시설부담금 자치구 초과교부금 반납금 2건(140백만원), 기타접수입 등(16백만원)
지난연도입		5,036	800	5,036	·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 징수(도봉구 쌍문동 소재 제일종합시장 재건축사업 재추진)
국보조금	85	485	485	400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빗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환경부, 400백만원)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빗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은 당초 도시공간개선단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조직이 개편되면서('15.8.31) 업무가 도시빛정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임.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은 미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 문화본부 공공디자인과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 시비 부담금을 회수해야 하는 금액¹⁰⁾ 23억 7,900만원 중 13억

9)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비 반환금 2,379백만원, 주민참여사업 시비 집행잔액 63백만원,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시비정산반환금 73백만원, 서부이촌동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미 집행액 65백만원.

10) 공사비 중 한전 부담금은 서울시가 선 부담, 준공정산일 기준 3년경과 후 30일 이내 해당 자치구가 한전에서 반환받아 서울시에 반납 조치 (한전 50%, 서울시 및 자치구 각 25%)

1,800만원(중랑구 해당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조직개편('15.1.1) 이후 세입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체되고, 도시계획국은 실제 징수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임.11) 또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당초 편성 예산 13억 1,800만원보다 많은 23억 7,900만원임.

한편, 시비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12)은 반환시기 등을 사전 예측하지 못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지난연도 수입 중 2014년도에 이월된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금은 38억 9,800만원이나, 2015년 징수결정액이 50억 3,6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2015년 7월 도봉구 쌍문동 소재 시장정비사업의 재추진에 따라 2011년 자금사정 악화로 불납결손 처리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 11억 3,800만원에 대해 재징수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억원임13).
-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세입예산과 수납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최근 3년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과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3	2,400	4,261	50	122	4,089
2014	-	4,089	191	1	3,898
2015	-	5,036	800	-	4,236

11) 공공디자인과(폐지, '15.1.1.)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관리과(도시경관팀)로 업무이관

12) 주민참여사업 시비 집행잔액 6,300만원, 소와낙후지역 경관사업 시비 정산 반환금 7,300만원, 서부이촌동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미 집행액 : 700만원으로 총 1억 4,300만원임.

13) 도봉구 쌍문동 소재 제일시장정비조합이 2007.2월 건축허가를 받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1,137,794천원)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징수할 수 없게 되자 부과금 전액을 불납결손 처리(2011.12.10.) 하였음. 2015.7월 정비사업 재추진에 따른 불납결손 해제(2015.7.16.)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체납금 중 8억원을 납부(7.16)한 바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¹⁴⁾에 대한 수납을 저조는 수납자와 미수납자간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및 비용을 수반하며 수납액 장기화에 따른 징수가능성이 낮아져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처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및 납부독려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징수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¹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처분후의 이월액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서상 이월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세입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사 유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및 재산압류중	기 타
일 반 회 계	4,248	2,221	9	1,680			338
세 외 수 입	4,248						
임시적 세 외 수 입	과태료	10		10			
	그외수입	2		2			
	지난연도 수입	4,236	2,221	9	1,668		338

* 그외수입은 소송비용액확정, 직원수당 환수액, 기반시설부담금 자치구 초과교부금 반환금,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임. 세외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2백만원은 소송비용 미회수 2건임.

14) 2016년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의 체납현황은 6개 자치구 9건에 42억 3,600만원임.

15)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4호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음.

2. 성과목표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가. 총괄

-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88억 6,000만원으로 이 중 147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4억 1,3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E=A-C-D)	불용률 (%) (E/A)
						계(D)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16,005	2,854	18,860	17,181	14,764	2,683	468	2,215	1,413	7.5
일 반 회 계	14,447	2,703	17,150	15,478	13,267	2,477	468	2,009	1,406	8.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558	151	1,710	1,703	1,497	206		206	7	0.4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1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3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14억 600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1,000만원으로 이 중 17억 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4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700만원임.

나. 세출예산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 : 없음

둘째, 이체에 관한 사항

○ 2015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가운데 이체¹⁶⁾는 일반회계 46건에 7,411억 1,3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13억 2,600만원으로 총 50건, 7,424억 3,900만원임.

- 예산이체 50건은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른 것임.

예산이체	사 업 명	금액(백만원)	조 직
일반회계 (46건)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시설비) 1건	100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연구용역비) 등 2건	620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기본경비 1건	194	도시계획과→d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미니어처 도시조성 기본계획(시설비) 1건	200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시민참여형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만들기(시설비, 사무관리비) 2건	250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건	727,763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3건	2,224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타당성 분석(시설비) 등 6건	1,000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기본경비 3건	79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시설비) 등 23건	7,083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과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등 2건	1,500	시설계획과→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마포유수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연구용역비) 1건	100	시설계획과→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연구용역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시설비)	144 422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16) 회계연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예산이체	사 업 명	금액(백만원)	조 직
(4건)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설비)	447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발전계획수립(시설비)	313	시설계획과→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셋째, 예비비 지출 : 없음

넷째, 이월(17)에 관한 사항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6억 8,3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일반회계) 3건에 4억 6,800만원,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1건에 20억 9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건에 2억 600만원으로 총 22억 1,500만원임.

회계	세부사업	통계목	이월액 (백만원)			이월비율 (%)	이월사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2,683	468	2,215		
일 반 회 계	소 계		2,477	468	2,009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시 설 비	1,018	327	691	65.1	· 신규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구 자체 추경예산 편성 및 사전절차 지연, 대상지내 민원발생으로 발주지연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연 용 구 역 비	60	60		56.1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병행추진

- 17)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계	세부사업	통계목	이월액 (백만원)			이월비율 (%)	이월사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시 설 비	81	81		50.6	· 사전절차 수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
	2015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사 관 리 무 비	60		60	18.9	· 수도권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 횡수 조정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 용 역 구 비	170		170	100.0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기간 12개월, '15. 3월~'16. 3월)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방안 수립	시 설 비	109		109	60.2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 과업기간이 12개월이나 용역계약이 '15.6월에 계약됨에 따라 과업완료까지 ('16.6)까지 절대공기 부족
	수서·문정지역 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 관리 방안 수립	시 설 비	136		136	50.2	· 용역의 주요 과업지역인 KTX수서역 일대에 대해 국토부에서 공공 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 계획 및 교통개선대책 등 서울시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 용역기간변경('15.5.26~'15.12.31 → '15.5.26~'16.4.30)
	서울시 R&D 지구(양재,우면) 육성 종합 계획 수립	연 용 역 구 비	183		183	100.0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기간:'15.4.22~'16.6.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	연 용 역 구 비	192		192	46.3	· 선행과업 지연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타 계획(생활권계획, 용산공원주변 관리기본 계획등)과의 정합성 검토를 위한 추가 소요기간 필요. · 용역기간변경('15.3.1~'15.12.31 → '15.3.1~'16.6.30)
	유휴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	연 용 역 구 비	96		96	100.0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 유휴철도부지 추가 발굴에 따른 용역과제 증가로 용역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용역과제(과업대상지) : 8개소 → 35개소 - 용역 준공기한 변경의뢰 : 2016. 1. 8 → 2016. 4. 8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시 설 비	43		43	65.2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용역 및 기본계획	시 설 비	242		242	60.0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기간 : '15.7.13~'16.10.12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 사업	시 설 비	87		87	49.7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 송파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구청의 명소화사업 최종보고회가 '15.9.9 일 종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며 공사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16년 4월 완료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소 계		206		206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 계획 수립	시 설 비	62		62	50.4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 설 비	144		144	63.2	· 과업추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

※ 이월비율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이월액임.

-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18)의 경우, 사업비 21억 8,000만원 중 3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일부 사업구간 민원발생 및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명시이월; 중구-2단계, 성북구), 자치구 추가예산편성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사고이월; 금천, 강동, 서대문, 종로, 중구-1단계)에 따른 것임19).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및 사업진행 현황>

구분	자치구	사업위치	예산현액(백만원)		차년도 이월액 (백만원)	비고 (`16.4.8현재)
			당해 예산	전년도 이월예산		
계		2,180	2,080	100	1,018.4	
'14~'15 사업	중 구	신당1동 302-4번지 일대	500	-	500 (명시이월)	공사진행중
	관 악 구	중앙동 459번지 일대	450	-		공사준공('15년)
	도 봉 구	방학동 431번지 일대	250	-		공사준공('15년)
	종 로 구	송인동 종로 63가길, 63다길	450	50	373	공사 진행중
	광 진 구	자양동 능동로 1길, 3길	-	50		공사 착공예정
	동 작 구	동작구 흑석역 3,4번 출구 주변	80	-		공사준공('15년)
'15~'16 사업	종 로 구	종로구 명륜길2~명륜길99-2	70	-	44	설계용역 중간보고 완료
	금 천 구	금천구 가산동 32번지 일대	70	-	16	설계용역 중간보고 완료
	강 동 구	강동구 암사·천호동 일대	70	-	38	설계용역 착수보고 완료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5-7길	70	-	0.4	설계용역 착수보고 완료
	성 북 구	성북구 장위동 231번지 일대	70	-	47 (명시이월)	설계용역 발주준비 중

18) 자치구와 매칭사업(5:5)으로 추진

19)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시와 자치구 예산 5:5 매칭사업으로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5년 신규 선정된 금천구, 강동구, 서대문구, 종로구(명륜동)는 설계용역을 위한 자치구 추경 예산 편성(9~10월)하고 용역 착수(11~12월)하여 '16년 5~6월 설계용역 준공예정(사고이월)
- 종로구 송인동사업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동의(6월),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9월), 공사 착수('15.10.21.)되어 '16.6월 공사 준공예정(사고이월)
- 중구 신당동사업은 대상지내 지중화사업 추진 및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일부 상인 반대로 지연됨에 따라 비 민원구간('15.10월 공사 착공)과 민원 구간(상인설득 중, '16년 하반기 공사 착공) 분리 시행(사고이월/명시이월)
- 성북구 사업은 '16년 타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시행 예정(명시이월)
- 도봉, 관악, 동작구 사업은 회계연도내 사업 종료

- 서울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학술용역²⁰⁾의 명시이월 사유는 이 사업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 관리계획으로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2015년 8월 10일 이후 용역 발주²¹⁾함에 따라 사업 추진지연으로 준공기간²²⁾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 유희철도시설 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은 “철도유희부지 활용지침” (국토교통부)의 제정·공포(‘15.7.17)에 따른 관련사항 검토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었고, 과업범위 확대²³⁾로 용역과제가 증가함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가 원인임.
-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특별회계)²⁴⁾은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상지 3개소²⁵⁾ 중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안암동권역으로 선정하고, 계획내용에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분석, 공공 및 민간부분 사업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등의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이 연기(‘16.1.29 → ‘16.7.31)되었기 때문임.
-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의 명시 및 사고이월은 대체로 사전절차 및 용역계약 지연, 용역기간의 장기화, 용역기간 연장, 과업범위 추가 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그 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 빛공해 방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21)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함(「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5항).

22) 용역과업수행 기간이 7개월(‘15.8.26~‘16.3.25)임.

23) 용역과제(과업대상지)가 당초 8개소에서 35개소로 증가함.

24) 용역기간 : ‘14. 6. 30 ~ ‘16. 7. 31 (25개월)

- 1차 : ‘14.6.30~‘15.6.30 2차 : ‘15.7.1 ~‘16.7.31

25) 안암동권역, 회기동권역, 이문동권역

고는 하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와 연계한 사업기간 설정, 예산의 편성 및 적기 집행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지출원인행위액 전체를 이월한 사업 3건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으로, 연구수행기관이 착수금 등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어, 결산의 명확화와 시민의 오해 불식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4억 1,3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0.1%보다 높아졌음.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600만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3억 5,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불용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	1,413 (7.5)	56	1	1,356	-	-
일반회계	1,406 (8.2)	56	1	1,349	-	-
도시개발 특별회계	7 (0.4)	-	-	7	-	-

주)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은 3.0%이며, 일반회계는 2.3%, 특별회계는 4.5%임.

- 불용률 10퍼센트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11건으로 다음 표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분	불용률 10%이상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	사 유
일반 회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85		57	15	운영비 집행 잔액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199	1,018	296	13	낙찰차액

구분	불용률 10%이상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	사 유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	29		3	12	개최회수 감소
	생태도시포럼 운영	9		2	18	메르스영향으로 포럼 개최회수 감소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100	43	14	14	낙찰차액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용역 및 기본계획	500	242	98	20	용역심사 감액(55백만원), 낙찰차액(43백만원)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2,971		555	19	- 계약심사 감액(211백만원)과 입찰시 낙 찰차액(185백만원) - 한양도성 삼선지구('15.12.10 준공) 및 인 왕, 남산지구('15.12.11준공) 공사기간 단축 에 따른 잔액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10		4	37	심의(자문) 안건 미발생
	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120	60	13	11	용역심사 감액(5백만원), 낙찰차액(8백만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200	81	28	14	설계내역 조정 감액(3백만원), 낙찰차액 (용역비, 24백만원; 보상금 백만원)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 사업	250	87	75	30	계약심사시 설계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 (66백만원)과 입찰시 낙찰차액(9백만원)

- 도시계획위원회, 비오톱 평가관리 등 위원회와 생태도시포럼 운영
과 관련한 운영비²⁶⁾의 집행잔액은 주로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한
회의가 적게 개최된 때문이며,
-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빛환경관리 계획
수립,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개발계획, 석촌동고분 경관조명
2차사업 등 용역과 관련한 사업은 용역 계약심사시 감액 조정 및
낙찰차액이 그 원인임.

26) 도시계획위원회: 2014년과 비교해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개최 실적이 각각 2회씩 감소 및
도시계획위원회 2015년도 예상 개최횟수는 본위원회 21, 소위원회 24회이나 실제로는 각각
19, 11회 개최.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 연 2회로 전환(2015년).
생태도시포럼 : 메르스 유행으로 개최 회수 감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법령에
정하는 심의안건 감소 등.

- 그 외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5억 5,400만원(18.7%)으로 시설비 3억 9,600만원, 감리비 1억 5,800만원임. 시설비 집행잔액은 계약심사시 감액과 입찰시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으며(집행을 85%), 감리비 집행잔액은 공사기간 축소에 따른 감리원 감축 배치로 발생하였음.

여섯째,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	내용	조치방향	소관부서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이월 관리 및 세입예산편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불납결손처분하여 별도관리하고 - 결손처분후의 이월액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서상 이월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세입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권고함. - 한편, 불납결손처리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회수 노력에 대한 내부점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금(기반시설부담금) 징수권은 자치구에 있으므로 미수납금 건축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점검하여, 징수가능성이 없는 건은 불납결손(일부) 처분토록 자치구에 조치요청함.(‘16.5.3) 	시설계획과
분할계약, 특정업체 집중 등 관행 개선 필요	<p>첫째, <u>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계약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u> 1억원이 넘는 사업이 3년 연속으로 공고, 재공고 이후에 1인 견적수의계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사실상 큰 금액의 계약이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약심사나 사업 평가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p> <p>둘째, <u>경쟁입찰 가능 노력을 해야 함.</u> 토지관리과는 공고와 재공고 기간을 붙여서 진행하는 관행을 고쳐 공고이후 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은 시스템 체계나 정보의 연계환경 등이 복잡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일반적인 타 업체에서는 입찰참가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나, - 향후 사업 추진 시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점진적으로 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한 업체에게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 또한, 빈번한 유찰방지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정보화사업 설명회’에 참여 	토지관리과

시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부서
	<p>찰자가 부족하면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함. 또한 기존업체의 계약 독식 지속되지 않도록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업체들을 섭외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기존업체가 그 어떤 업체보다도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고 집행부와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임. 경쟁입찰의 장점을 키우고 관-민 유착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함.</p> <p>셋째, <u>시스템운영 중장기계획을 수립</u>해야 함. 현재의 상태로는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이 계약을 독점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보여짐. 스마트카드의 사례처럼 특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부동산 정보는 파생적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짐. 또한 비용의 문제로 한 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됨.</p> <p>따라서 항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직접 고용형태의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예산절감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짐.</p>	<p>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2016년 정보화사업설명회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6. 1. 7(목)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참 석 : IT기업인, 사업부서 담당자 - 내 용 : 정보화사업 방향 및 발주 예정사업 설명 <p>* 정보화사업 설명회 홈페이지 (info.seoul.go.kr)를 통해 기업정보 등록 및 관심사업 등록</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서울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 사업발주 시에는 공고내역을 “서울시 및 조달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IT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종합하면,

- 결산이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장이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
- 도시계획국의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합리적인 세입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처럼 징수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결손처분후의 이월액은 다음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이용·전용·변경사용은 없으며, 이체,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음. 이체는 2015년 1월 1일 및 8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용역 계약심사시 감액 조정 및 낙찰차액이 그 원인임. 이용·전용·변경사용이 없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고이월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용역의 과업 범위 명확화를 위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발주시기 조정, 사전절차 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이 외에 정책적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사업 발주시 수의계약²⁷⁾ 및 하나의 업체 또는 몇 개의 업체에 집중 계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한 유찰방지 및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27) 2015년 도시계획국 용역발주사업 39건 중 수의계약발주는 총29건이며, 이 가운데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12건임.